2025년도 학생자치기구 학생회장·부회장 선거 일정 공고

2025년도 학생자치기구 학생회장·부회장 선거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1. 입후보 등록기간: 2024.10.08.(화) 09:00 2024.10.31.(목) 17:00
- 2. 입후보 등록접수: 학생회관 3층 H301 [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]
 - 가. '해당 선거관리위원회' 메일로 입후보 등록 서류 압축 파일 제출
 - 나. '해당 선거관리위원회' 연락처로 메일 제출했음을 알리고, 대면 제출 일시 협의
 - 다. '해당 선거관리위원실'에 입후보 등록 서류 인쇄본 제출
- 3. 자격 심사: 2024.11.01.(금) ~ 2024.11.02.(토)
- 4. 확정 공고: 2024.11.04.(월)
- 5. 유세 일정: 2024.11.05.(화) 08:30 2024.11.15.(금) 18:00
- 6. 선거일:
- 가. 1차(온라인): 2024.11.18.(월) 08:30 2024.11.19.(화) 18:00
- 나. 2차(오프라인): 2024.11.20.(수) 08:30 ~ 18:00
- 7. 이의 신청: 개표 종료 후 48 시간 이내
- 8. 당선자 확정 공고: 2024.11.21.(목) 18:00 이후

구분		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장·부회장
입후보자 자격요건	공통	1. 본 대학교에 4학기 이상 등록하고 7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2. 전체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.5이상인 자 3. 유급 및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. 대의원회 상임위원은 그 직을 사퇴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자 5.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제1장 제2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 6. 본 회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가.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 시 회원 100 인 이상 나. 단대 학생회 선거 입후보 시 당해 대학 회원 50 인 이상 7. 동일 직책의 임기가 연임되지 않는 자
입후보자 등록서류	공통	1. 입후보 등록원(소정양식) 1부 2. 재학증명서 각 1부 3.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4. 각서(소정양식) 1부 5. 회원 추천서(소정 양식) 1 부 6. 선거공약, 상징문 각1부 7. 입후보자 소견문 1 부(한 조에 1 부, A4 용지 2 장 내외) 8. 선거운동본부 상징(소정 양식) 1 부 9. 참관인 명단(최대 10 명) 1 부 10. 선거운동원 명단(입후보자 2 인, 일반 선거운동원 최대 8 인) 1 부
	그 외	11. 1~10번의 압축 파일

2024. 10. 18 중앙선거관리위원장

■ 학생 자치기구 학생회장·부회장 선거 운동 지침

선거 운동 기간은 2024.11.05.(화) 08:30 - 2024.11.15.(금) 18:00 까지로 한다.

선거 운동은 입후보자 및 등록된 선거 운동원만이 할 수 있으며,

- 선거 운동원은 중앙, 각 단대 선거관리위원회에 2024.10.18.(금)까지 등록한다.
- 1. 본 선거에서 선관위는 소견 발표회를 개최하지 않는다.
- 2. 오프라인 선거 운동 시, 선거 운동원은 입후보자 2인과 일반 선거 운동원 8인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, 교내에서만 진행해야 한다. (교외 금지, 집단 소견 발표 금지: 강의실 방문 등)
 - 단, 단대 행사 등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행사 주관자의 동의를 구하고, 이를 해당 선관위에 밝힌 뒤 연설할 수 있다.
- 3. 온라인 선거 운동은 입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,

SNS 선거 운동은 카카오톡으로 제한한다. (에브리타임, 인스타그램 금지)

- 1) 카카오톡 지침
- ① 경선의 경우, 카카오톡 유세 시 상대 후보의 초대도 이루어져야 한다.
- ② 카카오톡 게시글 업로드 전, 해당 선관위원 1인이 초대된 상태여야 한다.
- ③ 카카오톡 선거 유세 시, 게시글 업로드 후 별도의 발언 없이 채팅방을 나간다. 선관위원은 입후보자의 채팅방 퇴장 확인 후 채팅방을 퇴장한다.

카카오톡 유세 시, 해당 단대 학생은 입후보자에게 소견문/공약 관련 문의사항을 양식에 맞춰 문의할 수 있다. 단, 문의사항은 해당 선관위가 취합 후 입후보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선관위 sns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.

- 2) 영상물 지침
- ① 영상물 내용은 3 분 이내의 인트로(자기소개), 공약, 마무리 인사말로 제한한다.
- ② 배포 전 해당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선거 관련 유인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- ① 선거 포스터, 공약집은 입후보자가 규정에 따라 자율 제작하여, 해당 선관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 현수막은 중앙 선관위가 일괄 제작한다.
- ②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공약집 이외의 유인물을 배포할 수 없다.
- ③ 피켓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은 가능하나, 사비로 제작 후 해당 선관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- ④ 교내 가두 연설은 불가하다. (수업 방해 금지)

입후보자 및 선거 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.

① 금품제 ② 유언비어 유포 ③ 상대 후보의 비방 ④ 폭행 및 협박 ⑤ 불순한 언동 ⑥ 학생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⑦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행위

위 선거 지침을 위반할 경우, 「선거 시행 세칙」 제35조 및 제36조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의 등록 및 당선을 취소할 수 있으며, 학생지도위원회가 처벌할 수 있다.

> 2024 10. 18 중앙선거관리위원장